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7. 14.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6월 2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09년 7월 2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 개정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됨에 따른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금에 공휴일 할증을 신설하고, 지하층 청소요금에 대한 할증료를 지하4층 이하에서 지하2층 이하로 확대함(안 제7조)
-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음(안 제9조)

-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청소과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2조)
- 기타 인용법령, 용어, 조문 등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조, 제3조부터 제8조 등)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 9. 28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타 명칭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바, 본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골자

-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19 호
----------	--------------

제안년월일 : 2009. 7. 14
제 출 자 : 송수희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바, 본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골자

-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 「비송사건절차법」 ” 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 「비송사건절차법」 ” 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p> <p>「비송사건절차법」</p>	<p>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p> <p>「질서위반행위규제법」</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9 호
----------	---------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됨에 따른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법」으로의 통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목적규정에서 통합된 하수도법으로 근거법규 규정을 정비 (안 제1조)
- 다. “분뇨”·“오수”·“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청소”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안 제3조)
- 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소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바.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과 수집·운반업자의 대행,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할증수수료의 규정을 명확히 함 (별표)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및 시간외 근무시간 할증적용

- 지하2층 이하의 청소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할증 적용
- 사.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청소한 후 수수료 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로 변경 (안 제8조)
- 아.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법규를 정비함. (안 제9조 ~제 10조)
- 자.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하수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필요없음
- 라. 기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4. 3 ~ 2009. 4.22)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청소”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요금 부과기준,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또는 지역별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 직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규칙 제3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

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 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비 고	
분 뇨		10 ℓ	128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 본	750 ℓ 까지	18,710원		
	초 과	100 ℓ 당	1,320원		
	할증	야간 및 공휴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5.0%	

※ 지하할증 :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

※ 야간할증 :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조 제 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수납부(체납)

[조례 제12조제4항 관련]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297mm×210mm(신문용지 54g/m²)

<h1 style="margin: 0;">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h1> <p style="margin: 5px 0 0 0;">[조례 제12조제5항 관련]</p>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청인 : (인)</p> <h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h2>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하수도법」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제 호 </div> <h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과태료 납부독촉장</h2>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조례 제12조제6항 관련]</p>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p>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영 등 포 구 청 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명>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u></p>	<p><제 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u>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u></p> <p>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p><u>제3조 (분뇨처리기본계획) ①</u>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현행	개정안
	<p>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한다.</p> <p>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p> <p>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p> <p>4. “청소”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말한다.</p>
<p>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u>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u>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u>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u>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5></p> <p>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u>정화시설에</u>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1. <u>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u><개정 2000.03.25></p>	<p>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u> -----</p> <p>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u>개인하수처리시설</u>에 대하여 ----- ----- -----</p> <p>1. <u>정화조의 청소는</u> ----- -----<u>(오니 제거시</u>----- -----<u>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u>----- -----</p>

현행	개정안
<p>2. <u>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5></u></p>	<p>2. <u>오수처리시설의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u> ----- ----- -----<u>가동되지 않는 시설로서</u>----- -----<u>시설 내의</u>----- -----</p>
<p><u>제5조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예정용량, 예정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u></p> <p><u>②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③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u></p>	<p><u>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①</u> 구청장은 <u>개인하수처리시설의</u>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u>청소시기의</u> 1개월 전에 <u>청소시기, 요금 부과 기준,</u>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p> <p><u>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소 기한까지</u> 청소를 ----- -----<u>청소 촉구서를</u>----- -----</p> <p><u>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u> (----- ---)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u>법 제80조제3항에 따라</u></p>

현행	개정안
<p>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5></p> <p>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p>	<p>----- -----</p> <p>④ 구청장은 <u>개인하수처리시설에</u> 대하여 <u>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u> 위탁할 ----- --</p> <p>⑤ 구청장은 <u>개인하수처리시설</u>에 대한 ----- -----</p>
<p>제6조 삭제</p> <p>제7조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수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p>	<p>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u>법 제41조제1항에 따라</u> ----- ----- ----- <u>동별 또는 지역별</u> ----- ----- <u>구민의 요청이 있는</u> ----- ----- <u>처리하여</u> <u>야</u>-----</p>
<p>제8조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의 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9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②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p> <p>2. 장비명세서</p> <p>3.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개정 2001.03.31></p>	<p><삭제></p>
<p>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 삭제</p> <p>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p> <p>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3.25></p> <p>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03.25></p> <p>1. 대행기간</p>	<p>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p> <p>①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u>분뇨의</u> 수집----- -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u>----- -----수집·운반 <u>업자로</u> 하여금----- -----</p> <p>② 구청장은 <u>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u>----- -----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른 ----- ----- ----- ----- ----- 1. -----</p>

현행	개정안
<p>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p> <p>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p> <p>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p> <p>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p> <p>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p> <p>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p>	<p>2. -----</p> <p>3. ----- 적재톤수별 · 형식별 대수</p> <p>4.-----</p> <p>5.-----</p> <p>③ 구청장은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u> 대행계약을 -----</p> <p>-----</p> <p>④ <u>대행구역은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u></p> <p>⑤ <u>대행기간은 3년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u></p>
<p>제12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p> <p>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u>별표 2</u>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p> <p>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p> <p>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p> <p>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p> <p>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p>	<p>제7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p> <p>----- <u>법 제41조제4항에 따라</u> -----</p> <p>-----</p> <p>----- <u>별표의</u> -----</p> <p>-----</p> <p>1. -----</p> <p>-----</p> <p>2. -----</p> <p>-----</p> <p><삭 제></p> <p>② <u>야간 및 공휴일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u></p>

현 행	개 정 안
<p>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고시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0.08></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3.25></p>	<p><u>가산하여 징수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p>③ <u>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p>④ ----- ----- <u>별표의 기준에 따라</u> ----- ----- ----- ----- -----</p>
<p>제13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 ----- -----관리자는 <u>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 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u> ----- -----</p>
	<p>제9조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① <u>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수수료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14조 삭제<1999.10.08> 제15조 삭제<1999.10.0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0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p>제17조 삭제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삭제 ②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1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 직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규칙 제3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p>	<p><삭제></p> <p>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 위반 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 ----- ----- ----- -----</p>
<p>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u>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이내로 한다.</p>	<p>③ <u>구청장이</u>-----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u>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u>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u> ----- ----- -----</p>
<p>④ 삭제<2000.03.25></p>	<p>④ ----- -----별지 <u>제2호서식의</u> -----</p>
<p>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 ----- ----- ----- -----</p>
<p>⑥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p>	<p>⑤ ----- <u>60일 이내에</u> 별지 <u>제3호서식에 따라</u>----- ----- ----- ----- <u>제4호서식에 따라</u> -----</p>

현행	개정안
<p>⑦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후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p> <p>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⑥ ----- ----- ----- 제5호서식의 ----- -----</p> <p>⑦ -----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 -----</p> <p>⑧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04.03.23>				[별표]							
<p align="center">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p>				<p align="center">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p>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뇨		10ℓ당	128		분 뇨		10ℓ	128원			
정 화 조	기 본	750ℓ까지	18,710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기 본	750ℓ까지	18,710원			
	초 과	100ℓ당	1,320			초 과	100ℓ당	1,320원			
	할 증	야간	정화조 청소요금	7.0%			할 증	야간 및 공휴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지하4층 이하	정화조 청소요금	5.0%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5.0%	
※ 지하 4층이하의 정화조 시설 중 외부로 배출 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				※ 지하할증 :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 요금 제외 ※ 야간할증 :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